

2017 인권논문 수상집

우수상

자본주의, 그 무법(無法)지대의 청년인권

-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호모 사케르'를 중심으로 -

유현성



자본주의, 그 무법(無法)지대의 청년인권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호모 사케르’를 중심으로-

-요약-

본 논문은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 황정은은 단편소설을 분석하여 비가시적인 청년 인권의 실태를 나타내려 한다. 문학은 ‘인권에서의 인간’을 볼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러한 문학과 달리 현대사회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인권법에 의하여 보장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이들에게 비가시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회 구조적 시스템에 있어 가장 큰 폭력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인권침해는 대표적으로 청년에게 나타난다. 청년은 지금 ‘날것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공공적으로 승인 받은 ‘인권취약’계층과는 다른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것이 청년에게 가해지는 자본주의의 폭력이다.

이 점에 있어서 문학은 상당부분 근본원인과 직접원인의 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논자가 말하려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자본주의로 인해 무력화된 법이, 다시 진정한 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문학을 통해 고찰하여 보고, ②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에서 어떻게 ‘인권’을 찾고 지킬 수 있는지 탐색하며, ③ 법을 제정하는 주권자가 진정한 인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문학적 감수성 속에서 찾으려 한다.

인권과 공간에 대한 상호관계는 공간은 사물과 사람을 위치시키고 그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청년이 있는 인권‘공간’에 대해 아감벤의 논의인「인권을 넘어」를 살펴본 결과, 청년은 ‘난민화’된 시민들이다. 난민이 고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면, 난민화 된 시민인, 청년들은 있던 곳에서 국경이 사라진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나’(인권주체)와 ‘타자’가 만나는 곳은 ‘공간’이며 이‘공간’에 ‘인권’이 있게 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는 ‘인권감수성’이 ‘자본주의적 감수성’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자본주의적 감수성’을 ‘불편’하게 느낌으로써 우리는 인권감수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황정은의 소설은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서 되돌아보게 한다. 문학을 통한 청년인권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문학’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가시적인 인권상황’을 언어라는 가시적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인권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둘 째, ‘문학’은 주권자에 대해 ‘문학적 경고’를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권위와 같이 법과 제도에 대해 하나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셋 째, ‘문학’은 ‘타자’에 대한 불안을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타자간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이해의 지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감수성, 즉 ‘인권감수성’이다.

목 차

I. 인권, 문학, 자본주의	131
II. 호모 사케르가 된 청년과 타자 - 청년의 난민화	138
III. 황정은 소설에서 나타난 무법적 공간과 인권	142
1)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의 공간 - 「양산 펴기」	144
2) 생명 노동하는 호모 사케르 - 「디디의 우산」	150
IV. 결론	155

I. 인권, 문학, 자본주의

- 어떻게 생각해, 응?

C가 말했다. 나는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 이대로 다시 흐름이 바뀌길 기다려볼까, 아니면 다시 초코맨으로, 응?

- 다시 초코맨이라니.

- 다시 한 번 트레이닝이라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 라고 C는 거듭 묻고 있었지만,

나는 나중에 원망을 들을까봐 어느 쪽으로도 대답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런 시대인 것이었다.

-황정은, 「초코맨의 사회」중-

황정은의 단편소설집 『과씨의 입문』에서는 ‘날것의 생명’을 담아내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초기 작품인 「초코맨의 사회」¹⁾은 소설 주인공인 C가 취직하기 위해 ‘초코맨’과 ‘치즈맨’이라는 두 스펙을 가지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들이며 ‘초코맨’으로 변했다가 다시 ‘치즈맨’으로 변한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덕 때문에 C는 ‘초코맨’일 때, 취직하지 못하고, ‘치즈맨’일 때 노동을 하지 못한다. C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야만 취직이 되는, 그러나 결국 노동하지 못한다. 이 C의 등장은 앞으로 황정은이 ‘호모 사케르’가 돼가는 인물을 쓰겠다는 은밀한 선언문과도 같다. 황정은에게 이 작품은 이후 단편소설에 있어 중요한 단초점이 된다. 여기서 한병철은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이렇게 정리 한다.

호모 사케르는 본래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된 자를 말한다. 호모 사케르에 대한 살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 주권자가 법질서의 효력을 해제함으로써 예외 상태가 야기되는데, 이때 모든 개인에 대한 절대적 장악이 가능한 무법의 공간이 창출된다. (...)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 밖에 있어서 언제나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벌거벗은 생명인 것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오직 주권자의 권력 속에 편입됨으로써, 즉 “오직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무조건적 권력에 맡겨짐으로써” 정치화된다. (...) “우리 현대인이 정치적 공간을 시민권, 자유의지, 사회계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직 벌거벗은 생명만이 진정한 방식으로 정치적이다.” (...) “호모 사케르의 벌거벗은 생명”을 생산하는 추방이야말로 “정치적 근원 현상”인 것이다.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은 각각 질서를 이루는 경계선의 양극단에 서 있다. 주권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 호모 사케르이다.²⁾

1) 황정은,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문학동네, 2008.

2)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 104~105면, 2012.

인권과 문학은 서로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실상 인권과 문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다. 문학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인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다. 문학이 현실적 ‘권리’에 대해 법보다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겠지만, 문학이 ‘인간’을 그 어느 학문보다 치밀하고 심의적으로 다뤄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간단하게 정의했을 때, 문학은 ‘인권에서의 인간’을 볼 수 있는 학문이다. 또 문학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던가, ‘마르크스주의적 문학비평’ 등, 수 많은 문예사조들과 문학이론들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인간이 그 속에서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최근 문단에서 ‘문학의 정치’, ‘정치의 문학’이라는 키워드와 랑시에르 정치철학의 이론으로 많은 비평 담론들이 오가고 있다는 점은 자본주의와 인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문학에서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어느 학문 못지않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황정은의 소설은 특히 이지점에 있어 ‘호모 사케르’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성격의 문학과 비교하여 현대사회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인권법에 의하여 보장 받고 있다. 인권법의 범위는 모호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법 자체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은 법의 존재, 명시만으로는 모든 인권을 지킬 수는 없다. 이에 2001년, 인권위가 시작된 이래 국민들은 인권침해를 호소하게 되었고 인권위는 인권 사각지대였던 사회복지 시설, 정신병원 등, 많은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였다. 인권위는 인권옹호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사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권위의 출범 이후, 인권침해의 상당부분이 해결되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과 표명을 통해 사회시스템 구축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확인하고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않아 ‘강제력 없는 권고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비판적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정, 권고를 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법률적 강제를 시행한다면 차별 판단은 ‘기존의 법률적 테두리에 갇혀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인권사안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권 인식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인권위의 판단은 법률이나 판례보다 훨씬 전향적이어야 한다.³⁾는 점에서 인권위의 기능은 오히려 법적 강제력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사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인권위에서 인권사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인권침해는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사회 구조적 시스템에 있어 가장 큰 폭력은 ‘자본주의’이며 이 폭력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평등적 구조보다는 자유적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다. “국가는 권리실천에 대한 현대적인 이중적 요구(시민혁명에 의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에 직면한다.”⁴⁾ 이것이 현대인권 담론의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팽창은 국가를 그 영토 안에 존재하는 독점적인 유일한 권력

3)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과 우리 인권의 미래”,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27권, 11면, 2009.

4)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9권 3호, 210면, 2008.

소유자가 아니라 사기업과 경쟁하는 다양한 권력자 중의 하나로 전락시켰다.⁵⁾ ‘사기업은 이윤 창출하기 위해 정교하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은 사기업의 인권 유린의 방지를 국가에게 기대’⁶⁾했지만, “사법 시행의 전체 단계에서 빈곤층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법률 시스템 속에 내장된 자본의 논리 앞에서 차별을 받고 무력화된다.”⁷⁾ 이러한 현상은 노동현장에서 비밀비재하게 있으며 청년계층을 더욱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자본의 편익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값싼 노동력은 노동권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민은 자본에 대항하는 정치행위를 통해 인권영역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권력과 자본의 주도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많은 의제들이 탈-정치화되거나 은폐되었다.⁸⁾ 이러한 시장의 확대와 단일화 속에서 승자독점의 구조는 부당한 보상체계를 낳고 그 문제를 시민과 국가에게로 환원시켜 그 문제 역시 은폐 시켰다.⁹⁾ 즉 자본이 말하는 ‘시장에 맡겨라’, ‘시장으로부터 배우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는 당연한 국가의 운영방침이 된다. 비정규직, 법인세, 복지제도 축소, 복지혜택 계층 축소 및 복잡화 등이 이러한 요구를 낳고 언론은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보도하며 그 힘을 더 실어준다.¹⁰⁾

법을 피해 더욱 치밀해진 자본주의의 인권침해는 대표적으로 청년에게 나타난다. 수능시험은 단지 학생의 학습능력 평가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의식과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의 극심한 차이를 불러일으켰으며, 수학능력이 아니라 사회 ‘경쟁능력’을 강화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특히 경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수험생은 ‘피해자’가 아닌 경쟁에서 패배한 자로 남을 뿐이며 그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연말마다 들리는 이 ‘죽음’은 수능 ‘해프닝’으로만 남는다. 그렇다면 이 ‘죽이는’ 시험에서부터 살아남은 청년들은 이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들일까? 책임자가 많을 수록 책임은 N/1로 분산되어 ‘가해자’는 사라진다. 그들은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남는다. 이런 명시되지 않는 타자들의 존재는 대학입학 후에도 불안감을 조성한다. 정작 이 사건의 ‘가해자’인 자본은 청년들을 피나는 스펙을 쌓게 한다.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부모를 생각하면 일하면서 공부해야 하겠지만, 이 ‘스펙사회’에 일하면서 공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그 조차 벅찬 청년들은 학자금대출을 하면서 불안하게 공부하지만, 그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빚’ 많은 미래뿐이다. 이 불안한 ‘빚’의 미래에 청년들은 값싼 시급을 받으며 일하지만 일하는 노동 현장도 손님의 ‘갑질’에 몸살을 앓고, 편의점과 같이 개인만 있는 곳은 폭력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이런 노동력을 팔아 그들은 토익학원에 등록해 공부하지만 이것이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하는 ‘생존적 선택’이다. 힘들게 인턴자리를 얻어도 기업은 오직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무급’노동을 시킨다. 이 ‘열정페이’가 연봉처럼 쌓여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알면서도 청년들은 ‘을’인 그들은 이 자리까지 다른 ‘을’에게 빼앗길까봐 울며

5) 정원섭, “인권의 현대적 역설-롤즈의 민주적 평화론에서 인권”, 철학, 한국철학회, 112권, 1면, 188면 2012.

6) 정원섭, 위 논문, 188면.

7) 조효제, “인권 달성의 근본조건”,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5권 3호, 244면, 2015.

8)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0권, 2호, 72면, 2010.

9) 이재호, 앞 논문, 212면.

10) 이재호, 앞 논문, 303면.

겨져 먹기로 일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는 그들을 ‘달관세대’라며 ‘모든 걸 포기’한 세대라고 매도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행복추구권도 잃은 ‘삼포세대’, ‘N포세대’다. 기성세대들은 왕년을 운운하며 ‘옛날’시절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 좋았던 시절이 아니며 이 기성세대들이 ‘옛날’이라는 핑계로 그들을 부러먹을 뿐이다.

청년은 지금 ‘날것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는 그들을 국가를 이끌 인재라고 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시급은 스타디움들이 카페에 모여 공부하기 위한 ‘커피값’으로 사라질 뿐이다.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위해 ‘장그래법’이라는 우스운 법을 만들지 않나, ‘그저 받아드리라’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은 이 사회에 대해 ‘성남국에 살고’ 싶다는 냉소주의적 유머를 말하며 비웃을 뿐이다. ‘헬조선’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용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헬조선’이란 단어는 오직 ‘청년’들의 것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들, 정치인들이 ‘헬조선’ 운운하며 해결하겠다는 모습이 그저 웃길 뿐이다. 청년들은 특히 한국사회의 경쟁문화에 진저리를 치지만 이미 이 ‘경쟁’은 체득되어 다른 것 방식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이 꿈을 꾸기보다는 ‘공무원’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시험’ 보는 방법과 공부하면서 ‘노동’하는 법이었다. 이것이 공무원 시험이 고용보장이라는 안정성이 잘살게 해줄 것이라는 ‘대학입시’와 같이 만들었으며 국가가 원하는 청년들의 패기를 앗아가 버렸다. 그들은 오직 ‘경쟁’밖에 배우지 못했고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독기만이 남았다. 행복추구권이 있어도 그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심지어 ‘추구’ 가능성조차 이미 사회에서는 박탈시켜 버렸다. 국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안전한 만큼의 ‘자본’을 주지 않으면서 ‘벤처’나 ‘창업’이라는 위험을, 선택도 아닌 마치 지금 하지 않으면 ‘청춘’도 아니며 패기도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그들에게 강요할 뿐이다. 이 경쟁사회는 그 개인의 파편화를 더욱 공고하게 압축시켜 재구성의 가능성조차 차단했다.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 중, 법과 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연구자들이 있다. 먼저 오수용¹¹⁾은 법학이 인권연구를 주도해온 사실은 인권 문제를 주로 언어 또는 법적 언어의 차원에서 다루게끔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법조문 분석이나 판례 분석이 연구의 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기존의 인권 연구가 법학 위주로 이루어져 자본주의,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또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들은 오히려 인권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인권을 ‘주장’으로 간주하는 한계만을 노정시켰고, 법학계의 연구 경향은 인권의 문제를 법조문 해석과 판례 연구라는 정적이고 언어적인 차원으로 국한시켰으며 비제도적 차원 즉 도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갈등, 침해 등의 문제들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시켰음을 지적했다. 이는 법의 명시성이 자본의 유동성을 전부 명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김경민¹²⁾은 법이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단선적이고 제한적이

11) 오수용, “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인권의 본질로서 능력과 연구 방향”, 정치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16권 2호, 89면, 2010.

12) 김경민, “공감을 통한 문학의 인권감수성 형성-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꽃잎이 지고」를 대상으로 5·18 관련 인권 문제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4권 1호 49~53면, 2014.

며, 인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이론-제도-법규범-인권의 내용-감시 및 집행’¹³⁾이라는 제한된 시각의 접근으로 이미 이론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 해당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그 경계가 모호한 이들(제 3자, 관찰자, 방관자)이 자연스럽고 배제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졌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목해야하는 법의 특성상 ‘경계가 모호한 이들’ 역시 잡아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논자가 앞서 말한 ‘가해자 아닌 가해자’와 기억으로 승인 받지 못한 ‘피해자’ 역시 규명하는데 한계점으로 그 근거가 될 것이다. 그는 스텐리 코언이 비판한 이분법적 구도가 모호한 이들(제3자, 관찰자, 방관자)로 인해 넓은 의미로 제2의, 제3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논지를 펼쳤다.¹⁴⁾ 김기곤¹⁵⁾은 법은 마치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인권이 도덕적 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법실증주의자들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인권만이 인권이 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으며, 인권을 법률로 집행 가능한 권리만이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정리한다. 또한 인권을 법과 제도의 틀로 제약하는 것 역시, 시민의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며 인권의 법적 제도화는 권력과 연계된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항상 유익하게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은 정적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의미와 실천 행위들의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음도 우려한다.

이런 선행연구들은 법 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연구들은 자본주의 앞에서 무력한 ‘법’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분명 법은 인권을 보장해주며 현실적으로 인권주체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오히려 인권침해가 법에서 가시화되는 지점에서 벗어나, 최첨단 범죄처럼 법이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지점에서 치밀해지고 있다. 즉, 자본주의는 비가시적인 부분에서 ‘법’의 약점을 찾아 ‘법’을 해체시켰다. 자본주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인권을 침해하며 인권 자체를 자본의 논리 앞에 모호하게 만든다. 또 인권주체 설정에 있어 자본의 논리를 내세워 ‘주체’ 자체를 생략해 버리기도 한다. 법이 이 점은 ‘인권’을 모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법에 내재됨으로써 ‘법적 인권’의 정의가 모호해진 것이다. 인권의 존재 기반이 법이라면, 오직 법만이 인권을 규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불법이 자행되어야 법이 탄생하는 법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인권문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오로지 인권침해만이 인권을 증명하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집단이 인권침해를 더 겪는 이유는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권력이

13) “인권의 흐름에는 전문적 서사방식, 근원적 서사방식, 응용적 서사방식,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전문적 흐름에는 ‘법 준수 및 이행 결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에 접근하는 경향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국내 국제 인권기준이 있는데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의식이 다분히 깔려 있다. 인권의 전문적 서사방식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인권레짐은 ‘이론-제도-법규범-인권의 내용-감시 및 집행 방식’ 등이 정교한 톱니 바퀴처럼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자기완결적인 실천체계인데,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며, 특수하고 개별적인 영역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김경민, 위 논문, 재인용.

14)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는 법이 ‘사건’을 대하는 그 자체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법은 명확하게 처벌과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폭력은 다루지 못한다.

15) 김기곤, 앞 논문, 58~61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자원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원이 특정 집단이나 계급에 의해 독점되어 있으면 시스템 내에 폭력이 존재하게 된다. 어떤 구조적 폭력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는 것이다.¹⁶⁾ 이러한 폭력 속에 노출된 인권주체들은 근본원인¹⁷⁾ 속에서 수많은 직접원인들과 마주친다.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의 해결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 하지만 근본원인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와 투쟁으로서 이루어진다. 직접원인의 해결은 공권력의 개입이나 제도 수정, 혹은 인권위와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해소될 수 있지만 직접원인의 해결은 또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조효제는 이러한 역설에 대해 ‘직접원인과 근본원인 모두 개입해야 인권달성의 효과가 배가’되며 ‘시급한 직접원인을 해결하는 통상적 방법에 더하여 장기적 근본원인에 대한 개입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하며 ‘근본원인 분석을 통해 인권달성의 적절한 개입방법을 찾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항구적 해법을 추구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다’¹⁸⁾고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듯 근본원인의 해결은 사회 시스템에 있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효제의 방안처럼 직접원인과 근본원인 모두 개입하려면 각각의 원인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가? 물론 그런 방식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연결고리 자체의 해결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있어서 문학은 상당부분 근본원인과 직접원인의 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논자가 언급한 인권의 구조적 문제들과 문학은 상당히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주의로 인해 무력화된 법이, 다시 진정한 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문학을 통해 고찰하여 보고, ②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에서 어떻게 ‘인권’을 찾고 지킬 수 있는지 탐색하며, ③ 법을 제정하는 주권자¹⁹⁾와 타자가 진정 인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문학적 감수성’ 속에서 찾으려 한다.

문학은 어떤 상황과 갈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이점에 있어 레스트의 ‘인권감수성’은 ‘문학적 감수성’과 조우할 수 있다. 박순천과 조혜정의 인권감수성 개념의 정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권 문제가 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는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가 아니라

16) 조효제, 앞 논문, 241면.

17)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어떤 제도 혹은 가해자는 직접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와 가해자를 애초에 만들 어낸 시스템 그 자체는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근본원인이라 직접원인보다 앞선, 직접원인을 일으킨 심층적 조건과 환경을 가리킨다.” 조효제, 앞 논문, 237면.

18) 조효제, 앞 논문, 237~238면.

19) 아감벤은 이 ‘주권자’를 ‘법 없이 법을 제정하는 자’로 설명한다. 즉 법을 제정하는 주권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오히려 ‘법’은 주권자에게 무력하다.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55~145면, 참조, 2008.

인권 관련 상황을 해석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권의식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이다.²⁰⁾

이 점에서 ‘인권감수성’은 ‘문학적 감수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설의 서사성은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또한 문학의 언어적 감수성과 문학만의 미학은 전문적 서사방식을 갖는 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문학은 법과 제도가 닿지 못하는 공간, 다시 말해서 상황이 벌어진 공간을 보여주며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갈등하고 이해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인권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문학이라면 문학이 법과 제도가 닿을 수 없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지평에 대해 먼저 김경민은 5·18 문학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학은 꾸준히 이들(5·18 관련자)에 대해 관심을 보여.’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인 이들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형상화’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폭을 한층 더 넓게 해주었다²¹⁾고 말하며 ‘법적인 문제 해결이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건은 영원히 과거의 것이 되고 조금씩 잊혀지며’ 과거의 것으로 박제화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책임은 문학의 몫이 되었다²²⁾고 새로운 인권의 지점을 펼쳐놓았다.

이와 같은 인권의 한계점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난 인권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황정은의 단편소설 「디디의 우산」, 「양산 펴기」²³⁾를 다룰 것이다. 황정은의 소설은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뿐만 아니라, 문체의 감수성, 상황의 아이러니와 환상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다. 특히 황정은 문학에 나타난 공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공간성은 각 단편소설에서 길고양이와 노인의 공간, 시위와 상점, 대형마트 등, 비가시적인 인권 침해를 보여준다. 황정은이 제시한 이 문학적 상상력과 상황을 인권감수성과 함께 다루어 인권의 직접원인과 근본원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0) 박순천, 조혜정,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6권 130면, 2007.

21) 김경민, 앞 논문, 51면.

22) 김경민, 앞 논문, 53면.

23) 논자가 2편의 단편소설을 다루는 이유는 이 2편이 공통적으로 공간과 주체에 대해 정확히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디의 우산」은 청년인권을 다룰 수 있는 텍스트며 「양산 펴기」는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텍스트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황정은 소설의 대부분은 ‘타자’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적 감각으로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정은 소설의 연구가치는 특히 인권연구에 있어 그 역할이 크다 볼 수 있다. 문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을 논한다는 점에 있어 문학적 분석보단 상황에 대한 해석이 위주가 될 것이다. 기존 인권 연구가 주로 법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지점이 인권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Ⅱ. 호모 사케르가 된 청년과 타자 -청년의 난민화

김기곤은 인권담론의 개념적 발전은 공간적 속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간은 사물과 사람을 위치시키고 그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²⁴⁾ 이 선행연구는 공간성이 인권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권의 공간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공간성은 은유나 상징으로써 ‘사회적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청년주체를 공간에 호명한 것은 무엇인가? “인권은 개인의 지위, 요구, 의무 등을 국가의 사법권과 관련.”되며²⁵⁾ “인권의 제도화는 주체의 문제를 논쟁의 쟁점으로 끌어 올린다.”²⁶⁾ 즉 인권주체의 호명은 국가, 사회의 호명이다. 알튀세르의 호명 테제에 따른 주체화이기도 한 것이다. ‘청년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실 인권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청년’이라는 주체를 호명한 것이기도 하다. 왜 청년이 인권이라는 공간에 호명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왜 인권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취약계층이 ‘인권의 실현공간인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⁷⁾ 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인권주체는 청년이 될 것이다. 청년인권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진척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청년이란, 국가에게 있어 잠재적 기득권층이자, 사회의 인적자원으로써, 어떤 계층에 고정적(장기간)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곧 변동될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인권에 대한 논의가 자본에 대한 인권, 특히 노동인권으로 편입되어 논의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청년은 고정된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인권이 법이나 제도로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난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에 머물다가 다시 ‘취업준비생’라는 정체성을 가진 채, 회사라는 공간으로 ‘이동성’²⁸⁾을 지닌 존재로서 취급받을 뿐이다. 하지만 이 ‘취업준비생’이라는 주체는 보장된 ‘사회적 공간’이 없다. 그들은 ‘수저 계급론’, 특히 ‘흙수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켜 자신들 스스로 사회적 공간을 제시하며 자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 사회적 공간의 압박으로 인해 청년들은 마르크스의 말처럼 시민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에 매달리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턴 착취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청년

24) 김기곤, 앞 논문, 49-90면.

25) 김기곤, 앞 논문, 59면.

26) 김기곤, 앞 논문, 60면.

27) 김기곤, 앞 논문, 53면.

28) 앞서 언급한 김기곤의 논문은 공간성을 다루면서도 이 이동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구조는 결국 공간의 이동 역시도 포함한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이동성은 매우 빠르는데, 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국제 교류 역시도 이 ‘이동성’에 영향을 준다. 청년은 가장 ‘이동성’이 빠른 주체인데, 이 ‘이동성’은 시간을 만나 속도를 가지게 되며 이 속도는 사회제도나 법으로 세밀하게 잡아낼 수 없다. 법은 사회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생긴 이후에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대 30대의 정치 냉소주의는 이러한 이동성의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인권 보장은 완전히 성립되기 어렵다.

들이 정치에 냉소하는 이유가 이것일 뿐더러, 더 이상 정치적 행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 역시 이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법과 제도가 인권을 보호하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분명 일조하지만 그 공간의 ‘안과 밖’에 대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인권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과 공간 담론을 다루고 나서 이제 공간 속의 주체가 어떻게 공간에서 ‘의미화’되는지 논의하려 한다. 이 ‘청년’이라는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 지젝의 주체이론을 말하고자 한다. 지젝은 라캉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존재의 ‘현실은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 등 얽혀 있는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은 상징적 차원.’라 설명한다. 이때 상징계와 관련된 개념인 ‘대타자는 무엇보다 상징적 질서를 지탱하는 진정한 타자성’이며 ‘대타자는 독립적 질서인 말이 구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즉 대타자란 상징계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계에 있던 자아는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주체화된다. 이때 주체화를 시키는 것이 상징계, 곧 대타자이다.²⁹⁾ 이런 위상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젝은 “우리 자신을 언어나 그 외 상징적 질서에 종속시키는 과정을 ‘주체화’라 부른다.”³⁰⁾ 사회적 곧 상징적 질서이기도 하며 공간이기도 하다. 어떤 주체가 어느 공간에 속해있다는 것은 그 주체의 주체화의 속성이 결정된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인권주체인 ‘청년’은 ‘주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화’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주체’는 단지 주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한다. 이 주체들이 문제화되는 것은 ‘주체화’되는 공간의 속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주체’와 ‘공간(상징)’³¹⁾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즉 ‘청년’으로 상징되는 주체들을 ‘인권’이라는 공간 속에서 바라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이 있는 인권 ‘공간’은 무엇인가? 논자는 아감벤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감벤은 「인권을 넘어」에서 인권과 난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는 ‘난민은 인민의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며 오늘날 도래하는 정치 공동체의 형태와 그 한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범주’³²⁾라 말한다. 즉 난민의 ‘주체화’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또 ‘난민이 국민국가의 질서에 이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표상한다는 것은 출생지와 국적 사이의 동일성을 깨뜨림으로써, 주권의 원초적인 허구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라 규정하고 ‘난민의 개념을 인권 개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며, 피보호권은 난민 현상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개념적 범주로 더 이상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³³⁾라며 다원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난민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세계적으로 난민화가 이루어질 당시라는 점과 국가 외부의 문제라 지적하는 시각이라면 그의 주장을 나름 이해

29) 상징계, 대타자와 주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18면, 2007, 김석, “에크리”, 살림, 172~184면 2007. 참조.
30) 토니 마이어스,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92면 2005
31) 담론에 있어 공간은 주로 ‘위상학적’이라는 은유로 자주 사용되고는 한다. 또 이 ‘공간’은 상징이므로도 그 논거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김기곤, 앞 논문, 51면. 참조.
32)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김상운 역, “인권을 넘어”,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36면, 2006. 3. 이 논문에서 아감벤은 난민과 인권, 그리고 국가 간의 정치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난민이라는 외부 주체의 불안한 영향력에 대해 말한다.
33) 조르조 아감벤, 위 논문, 240~241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이 ‘난민화’가 된다면, 아감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그가 지적한 대로 난민은 정치 공동체의 형태와 한계를 보여주는 범주다. 국민, 시민의 난민화는 이 법과 제도, 국가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그의 말대로 난민의 개념을 인권 개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언정, 시민을 인권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이 바로 이 ‘난민화’된 시민들이다. 그들의 거주구역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거주해야 한다. 늘 난민화 상태이며 거류 중인 상태이다. 그들은 무국적자다. 난민이 고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면, 난민화 된 시민인, 청년과 노인들은 있던 곳에서 국경이 사라진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청년 ‘무리’들은 난민으로 본다면, 이 난민들은 빈부격차로 인해 탄생했다. 빈부격차는 상류층과 중산층의 탈-경계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하류층 사이를 탈-경계화 시켰다. 그들은 ‘중산층 출신’의 난민이며, 그들의 거주 구역은 그 어느 소속의 영토도 아니다. 그들은 남극이나 북극 같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서 출생했다. 이 ‘중산층 출신’의 난민들은 출생지가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이다. 그들에게는 애초에 부여된 시민성도, 국가도, 시민권도 없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진정한 ‘날것의 생명’이다. 중산층의 땅은 땅을 만들 만큼의 인간을 쌓아 ‘경쟁’ 위에 구축된다. 이 ‘경쟁의 땅’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으로서 그 조약³⁴⁾이 아무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땅에 있는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또한 조약은 법이 아니다. 규칙³⁵⁾이다. 경쟁의 규칙이지, 어떤 보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립지대처럼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은 조약만이 있으며 거주하는 거류민만 있을 뿐이다. ‘중립’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은 그들을 자연적으로 자유롭게 ‘만’했다는 점은 그들을 호모 사케르로 만들었다. 이러한 무법공간에 ‘신자유주의’는 각국의 ‘남극과 북극’ 자원전쟁처럼 경쟁을 가능하게 했고 가속화 시켰다. 아감벤은 난민(무국적자)을 외부에서 국가로 유입되는 주체로 보았지만, 만약 난민(무국적자)이 국가가 아닌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놓여 있다면 부족민이라고 달리 말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이 ‘난민’들을 이 경쟁의 땅에 몰아넣고 자원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무국적’이 된 시민은 아감벤이 난민(무국적자)의 성격을 ‘시민이 아니라 거류민’으로서 있으려하는 정의를 뒤집는다. 조약은 경쟁의 평등을 보장하지, 불평등 해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조약은 새로 갱신될 뿐이다.

청년계층은 이 ‘난민’에 묶이게 되며 이들은 무법지대에서 거류하게 된다. 인권 침해는 ‘국가 이하의 사회적 공간 단위’에서 발생한다³⁶⁾는 지적은 다시 유효해 진다. 본래 인권의 공간성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현실화되었지만, ‘사회적 공간은 상징의 분배 여부에 따라

34) 이 조약 역시 자본의 논리로 만든 조약일 것이다.

35) 지적은 이러한 규칙이 오히려 주체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언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가 필요하듯이, ‘규칙’은 주체를 억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오히려 ‘규칙’을 내세움으로써 더욱 자유로운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 내용은, 슬라보예 지젝, 앞 저서, 16~38면. 참조.

36) 김기곤, 앞 논문, 74면.

집단적 일체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및 고립을 발생시키기도 한다.³⁷⁾ 하지만 난민화 된 청년은 집단적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무리’의 특성만을 가질 뿐이다. 그들은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및 고립’에 거주한다. 논자가 이들에게 ‘난민’이라는 언어를 부여한 것은 ‘언어 및 집단적 표상 행위를 통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은 상징을 통한 공간의 분리가’ 이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사실 논자가 생각하기에 논자가 언어를 부여했다기보단 그들에게 비가시화 되었던 난민성을 밝혔을 뿐이다.

이 무법의 공간에서 호모 사케르가 존재한다. 한병철은 아감벤의 ‘추방령’은 주권사회의 폭력의 공간구조이지 현대 성과사회의 폭력 공간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한다. 성과사회의 호모 사케르들은 전일적 지배를 확립한 정상 상태, 긍정성의 상태 속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의 근거를 재구성하려고 한다.³⁹⁾ 하지만 한병철의 ‘피로사회’는 한국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명 한국사회의 성과주체들은 ‘자기 자신의 호모 사케르’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아감벤의 주권사회는 성과사회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 ‘주권’이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성과는 조직 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조직, 더 넓은 범위로 공동체 밖에 있는 주체에게 ‘성과’는 굳이 증명할 필요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주체들, 특히 청년주체들은 자신들의 ‘노동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거나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성과는 공동체의 것이며 청년은 그저 ‘무리’상태이다. 공동체와 무리의 차이는 공동체는 무엇을 생산하지만 무리는 단 하나의 목적, 동물의 생존과 같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저 ‘모여’있을 뿐이다. 그들이 타집단에 증명할 것은 자신의 노동력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법이 없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 즉 ‘무법지대’에 인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타자’로서 나타난다. ‘타자’에 대해서 라캉은 ‘주체는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를 매개로 예측된 확실성의 단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확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이해의 순간’과 ‘결론의 순간’을 거쳐야 한다. 시간적으로 뒤늦은 이 두 순간의 분절이 거꾸로 최초 응시에 확신을 준다.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응시의 순간’→‘이해의 순간’→‘결론의 순간’순으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의미는 ‘결론의 순간’→‘이해의 순간’→‘응시의 순간’으로 거꾸로 부여된다. 뒤의 사건(순간)이 앞의 사건의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체의 응시는 다른 주체들(타자)과의 응시의 교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호 주체성의 구조에 의해 비로소 확실해진다. 이를 토대로 라캉은 주체 상호성의 관계가 모든 인간 행동의 필연적 조건임을 역설한다.⁴⁰⁾ 이러한 라캉의 논의는 타자와 주체와의 상호성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인권과 결부시키면 이 타자와 주체와의 관계가 ‘인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타자’

37) 김기곤, 앞 논문, 78면.

38) 김기곤은 이에 대해 “이는 개인과 집단을 강제적으로 구별 짓는 차별과 배제로 이어진다. 이것을 마갈릿이 제기한 상징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며 경고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논자는 이것을 역이용해 더 명확히 밝히려 한다. 김기곤, 앞 논문, 78면.

39) 한병철, 앞 저서, 108면, 참조.

40) 김석, 앞 저서, 97면.

를 응시하고 타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 그리고 결론을 통해 사건을 이해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결론의 순간’은 인권침해를 받은 타자를 ‘이해의 순간’으로 이끌고 이 ‘이해의 순간’은 우리가 다시 타자를 ‘응시의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다.

논자가 ‘공간’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인권주체)와 ‘타자’가 만나는 곳은 ‘공간’이며 논자의 정리가 유효하다면 이 ‘공간’에 ‘인권’이 있게 된다. 위에서 논한 ‘공간=인권’이라는 근사값의 은유는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 명확해졌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이제 ‘인권주체’와 ‘타자’와 ‘공간’이라는 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인권이라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내려 한다.

Ⅲ. 황정은 소설에서 나타난 무법적 공간과 인권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에서 ‘총체성’⁴¹⁾과 ‘문제적 개인’을 얘기한다. 루카치의 총체성은 대상의 내용성으로 부터 명징한 모습을 띤다. 이 대상의 내용성은 ‘문제적 개인’을 통해 명징해지는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의 내부 세계를 근거 짓고 있는 것과 동일한 범주적 형식들의 내용상 다른 기반이자 질료이다. 세계와 문제적 개인은 서로를 조건 짓는 현실이다.⁴²⁾ 이 ‘총체성’을 ‘공간’으로 치환하여 소설에 나타난 ‘문제적 개인’을 ‘인권주체’로 환원할 것이다. 즉 인권의 ‘총체성’은 문학에서의 ‘공간’에서 드러나며 ‘인권주체’의 인권침해는 ‘문제적 개인’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을 규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문학이 실제 인권현장에서 어떤 의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안하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 그것은 ‘인권감수성’이다.

문학에 있어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감수성’은 공감의 토대이기도 하며 현실을 보여주는 ‘리얼리티reality’과 달리 실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김경민은 김두식의 주장을 언급하며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인권감수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데,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서 주인공이 한 말을 빌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인권감수성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해볼 수 있는 문학이야말로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⁴³⁾이라고 말한다. 박순천, 조혜정은 레스트의 인권감수성과 그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레스트(REST, 1983)는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

41) ‘원래 총체성이라고 말할 때 헤겔은 우선 부분과 개별에 대한 전체, 모순과 대립에 대한 통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지만, 본래 헤겔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모든 모순과 대립의 양상은 사실은 하나의 것의 서로 다른 모습에서의 나타남이며, 또는 개별적인 부분들의 언뜻 보아 무질서한 집합체로 볼 수 있는 현실도 본래는 커다란 질서를 지닌 하나의 것의 우연한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것(통일성, 총체성)에 해당하는 것이 총체성이다.’ 가토 히사타케, 이신철 역, 『헤겔 사전』, 도서출판 b, 412면, 참조, 2009.

42)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참조

43) 김경민, 앞 논문, 65~66면.

하는 ‘인권 감수성’, 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인권에 대한 판단력’,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 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 갈 수 있는 ‘인권옹호행동과 관련된 성격’이라는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지영은 인권에 대한 인지능력 및 정서적 공감에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지변인보다도 정서라는 변인이 인권옹호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⁴⁴⁾

이 점을 통해 우리는 문학의 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이 아주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고 독자가 그것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그 문학적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 역시 이와 유사하다. 더욱이 라캉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인권감수성’ 역시 연관이 가능하다.

인권 감수성은 크게 3가지 요소 즉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상황지각은 상황에 대한 해석능력으로서 특정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능력이다. 둘째, 결과지각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능력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타인의 정서인식능력도 포함된다. 셋째, 책임지각은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⁴⁵⁾

이 인권감수성의 3가지 요소는 ‘응시의 순간’, ‘이해의 순간’, ‘결과의 순간’에 부합한다. 타인이라는 관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상황을 응시하고 타인의 이해가 책임에 대한 이해가 되며, 결과지각은 결과의 의미를 이해한다. 인권감수성 척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감수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⁴⁶⁾ 결국 문학은 비가시적인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척도 인 것이다. 황정은의 소설에서는 이 인권감수성이 ‘자본주의적 감수성’으로 나타난다. 즉, 이 ‘자본주의적 감수성’을 ‘불편’하게 느낌으로써 우리는 인권감수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황정은 소설에서 ‘불편함’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준⁴⁷⁾은, 황정은의 등장인물들을 정치의 혁명을 초월하는 ‘마음의 혁명론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무감각한 채로 지옥의 전당을 윤이 나게 닦고 있을 뿐인 계산적-합리적 부르주아들의 사회 속에 살아가기보다, 그들은 궁핍하고 외로울지언정

44) 박순천, 조혜정, 앞 논문, 130면

45) 박순천, 조혜정, 앞 논문, 130~131면

46) “인권감수성 척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중 대학생 및 성인용을 사용하고자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감원대상(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김씨의 구속(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인 학교(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진료자명단(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공장건립(환경권), 황판사의 고민(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러씨의 임금(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의사의 고민(장애우의 신체자유권),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결혼할 권리)이다.” 박순천, 조혜정, 앞 논문, 139면.

47) 유준, “마음의 혁명 - 황정은 소설집, 『파씨의 입문』(창비, 2012)”,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83~286면, 2012년.

마음 한자리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삶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평한다. 또한 황정은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감수성을 쇄신하는 일로 그것은 모든 추함에 대한 거부와 아름다움에 대한 예민한 인지며 예술가로부터 우리가 입을 가장 큰 혜택은 우리의 공감을 확장하게 된 것임을 주지했다. 즉 황정은 소설의 인물들, ‘마음의 혁명론자’들은 공감을 통해, 아름다움을 향해 마음의 연대를 결성한다는 것이다. 이 넓은 지평의 ‘감수성’은 ‘인권감수성’을 포괄할 만큼 넓은 것이며 인권과 문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황정은 소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주권자와 호모 사케르의 공간

- 「양산 펴기」

좀 먹자고 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뭘.

제정신이나며.

그뒤로 더는 말을 나누지 않고 밤엔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게 전부였으니 다뤘다기보다는 다쳤다고 해야 하나. 감정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어딘가 손쓰기 어려운 심층적인 부분을. 말도 없는 사람을 등으로 의식하며 깡통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위로 두더지 머리처럼 불룩 솟아 있었다. 찻잎을 담았던 것으로 주먹을 두 개 겹친 것보다 조그만 물건이었다. 그뿐인데 녹두도 나도 당분간 손댈 수 없는 불편한 물건이 되고 말았다.⁴⁸⁾ (134면)

황정은의 「양산 펴기」에서 기계 엔지니어인 ‘나’는 텔레비전 위의 작은 깡통에 돈을 모아두면서 언젠가 지구본을 사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녹두’는 장어를 먹자고 한다. 그저 작은 ‘깡통’ 속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 깡통엔 3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을 뿐인데, 그들은 그 작은 돈으로 인해 ‘다친다.’ 이 작은 돈은 그들에게 손댈 수 없는 불편한 물건이다. 그 작은 자본이 이 둘에게 ‘제정신’을 묻게 한다. 녹두와 다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누이가 함께 상품을 파는 ‘알바’를 하자고 연락을 받게 된다. ‘나’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녹두에게 장어를 먹이자고 마음을 먹는다. ‘나’와 ‘녹두’는 이 작은 돈에 다칠 만큼 자본에 소외되어 있다. 이 작은 ‘자본’이 ‘나’를 쉬는 날도 없이 일하러 가는 ‘호모 사케르’로 만든다. 여기서의 감수성은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출발한다.

장소에 도착한 ‘나’와 ‘누이’는 판매자에게 상품을 받지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그냥 팔’라며 쾌활하게 대답하고 사라진다. 그들은 상품을 파는 ‘판매원’이 아니라 상품보다 못한 상품을 파는 기계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파는지도 모른다. ‘나’는 본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저 기계일 뿐이다. 그는 본 직장에서 ‘머슴’이고 ‘기계 똥꼬’나 쫓는 노동자다. 이러한 자본 소외에 처한 호모 사케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정은은 「양산 펴기」를 통해 주권자의 공간과

48) 황정은 “파씨의 입문”, 문학동네, 134면, 2013. 앞으로 인용문은 면수만 표시.

호모 사케르의 공간을 함께 겹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간이 하나로 모이면서 황정은은 주권자의 모습과 호모 사케르의 노동을 한 장소에 모아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런데 주권자의 공간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이 완전히 겹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되면서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만간 있을 지방선거에서 한 표 당부한다며 건네는 홍보전단까지 몇 장 받아들였다. (...)

안녕하십니까.

(...)

구청장 후보 위모입니다, 하며 건네는 손을 얼떨떨해서 맞잡았다. 일행 가운데 풍채가 가장 좋고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기호가 적힌 넓은 띠를 사선으로 가슴에 두르고 있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행사 취지를 물었다. 모르겠다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곁에서 그의 보좌관인 듯한 남자가 대답했다.

이웃돕기 바자회인데요. 매년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며 구청장 후보가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면 이 행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쓰십니까 나라에서 단체 지원금은 좀 나오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다. 곁에 있던 남자가 또 나서서, 작년엔 이 단체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구청장 후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다.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물었다. 우리 유권자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바자회에 참여하시게 된 건가요.

저요.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건데요. 돈 벌려고요 녹두에게 장어 먹이려고요, 그렇게는 말 못하고 카메라도 신경쓰여 어물거리고 있다가 말했다.

판매 도와주러 왔는데요.

아 그럼 자원 봉사하시는 겁니까.

.....

오늘 여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누이가 무뚝뚝하게 답했다.

그냥 알바예요.

알바?

아르바이트라고요. 아저씨.(144~145면)

여기서 주권자와 보좌관이 등장한다. 주권자와 ‘나’는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보좌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보좌관이란 말 그대로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들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매개자는 ‘타자’로 등장한다. 보좌관 역시도 ‘나’ 즉, 호모 사케르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는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호모 사케르의 언어를 대신한다. 즉 호모 사케르와 주권자와의 오버랩이다. 그런데 발화자가 명확한데도 호모 사케르와 주권자의 ‘의미 없는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좌관이며 보좌관은 그들의 ‘언어적인 코드’를 해설하는 것이 아닌 호모 사케르의 언어를 생략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보좌관은 호모 사케르들을 예외

상태로 만들지만 그는 법이 아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곳은 법의 바깥, ‘무법지대’인 것이다. 보좌관은 호모 사케르에게 ‘타자’로서 등장하면서 이 타자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 간의 대화를 차단한다. 무법지대엔 법 대신 이러한 ‘타자’가 등장한다. ‘나’와 누이의 노동을 주권자는 ‘자원 봉사’로 본다. 주권자는 그들을 ‘유권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저 ‘자원 봉사자’일 뿐이다. 그들은 자본의 ‘자원 봉사자’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주권자인 위모씨가 보여주는 것은 ‘무관심의 폭력’이다. 아감벤은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비유로 들면서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앞에 메시아(주권자)’가 ‘무한정 유예 상태인 법을 완성하지도 다른 법으로 대치’할 수도 없을 것이라 말한다.⁴⁹⁾ ‘인권의 의무 주체인 국가가 인권 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권자의 예외 상태⁵⁰⁾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모든 제도적 관계가 인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인권과 관계된 것도 아니’라는 근본적 제약이 존재한다.⁵¹⁾ 주권자는 그들이 왜 이 ‘공간’에 왔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 보좌관이 타자로서 의미있는 대화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호모 사케르와 주권자가 함께 있는 이 ‘공간’은 ‘무법지대’다. 여기서 황정은이 이 장면에서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가 이 인권주체에 대해 무관심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인권의 ‘비가시적 사례’를 보여준다.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인권은 보장 받지 못하며 그들이 이 곳에 오게 된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다. 주권자에게 인권은 ‘가시적’이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이다. 황정은의 문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누이가 주권자에게 ‘알바’라 말하며 호모 사케르의 실재를 보여주지만, 황정은은 그 이후에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주권자가 당황해한다거나, 카메라가 그런 당황한 모습을 찍는다거나, 보좌관이 급하게 누이의 말에 대한 변명을 한다거나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며 기사에는 ‘구청후보자 위모씨, 바자회에서 망신’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나와 잠깐 비웃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들이 ‘자원 봉사자’로 오해된 것은 제외된 채 말이다.

황정은은 의미적으로 각각 흩어진 주체의 공간을 한 공간에 모으기 위해 오버랩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법의 공간’과 ‘무법의 공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삼시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가 시작되었다. 노점상연합 공무원노조 철거민연합이라고 적힌 현수막 세 개가 올라가고 바위처럼 살아가보자는 노래가 시작되는 상황을 어리둥절해서 지켜보았다. 매년 하는데 올해엔 사람이 적네, 속옷공장 사장도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깜짝 놀랐다./집회를 저렇게 매년 하나요?/내가 묻자 무슨 말이나는 듯 그가 나를 보았다./아니 바자회를. (142~143면)

49) 조르조 아감벤, 위 저서, 132면.

50) 주권 권력이 자신을 일종의 자연 상태로 전제하듯이, 그리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추방령 관계를 통해 법치 상태와 결합되어 있듯이, 주권 권력은 자신을 제한적 권력과 제정된 권력으로 나누지만, 비식별 지점에 머물면서 이 두 권력 모두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함의를 충분히 인식한 시에예스는 따라서 「국민과 동일시된」 제한적 권력을 사회적 관계 외부의 자연 상태에 위치시켰다.” 조르조 아감벤, 앞 저서, 104면.

51) 김기곤, 앞 논문, 61면.

로베르따 디 까메르노 웬 말이나 자외선 차단 노점상 됩니다 안 되는 생존 양산 쓰시면 물러가라 기미 생겨요 구청장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라 나와라 가볍고 콤팩트합니다 방수 완벽하고요. (144면)

국산 뺨스 나와라 양말 세 켄레 구청장 오천원 전통 있고 몸에도 좋은 우리 생존권(147면)

첫 번째 오버랩은 ‘바자회’와 ‘집회’다. 속옷공장 사장과의 대화 장면에서는 ‘공간’을 오버랩한다. 그들의 생존행위에 있어서 집회는 사실상 다를 게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같은 호모 사케르임에도 서로의 생존행위에 있어 무관심하다. 서로가 난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들의 오버랩’을 황정은은 초기 단편인 「무지개꽃」(『작가세계』, 2005년 가을)이나, 「야행夜行」(『창작과 비평』, 2008년 봄호)에서 보인 적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소설들의 소리들은 ‘의미 있는 소리(발화)’와 ‘무의미한 소리(소음)’의 오버랩이었다. 그런데 「양산 퍼기」에서는 ‘의미 있는 소리(발화)’들을 오버랩한다. 그 소리들은 다른 집단 간의 생존 의미를 동일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으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발화한다. ‘안 되는 생존’, ‘구청장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라 나와라’, ‘몸에도 좋은 우리 생존권’이 그렇다. 의도적으로 이런 다른 발화자들의 시니피앙들을 오버랩함으로써 발화자가 다르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화는 오히려 오버랩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무의미하게 들린다. 이것이 황정은이 호모 사케르들의 발화가 주권자에게 얼마나 무의미하게 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점점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 인색한 시대’를 보여주며 ‘무정함과 잔인함을 오버랩(overlap)’시킨다. ‘현실의 재난은 화면 속의 스펙터클과 분간할 수 없고, 타인의 고통은 자주 이미지로 대상화’ 시켜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만큼 무뎌지고, 깊숙이 들여다보기 보다는 자신과 대상 사이의 거리감에 안위하며 회피’한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자기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익숙한 회로로 파악할 수 없는 사태를 사유하는 것을 소모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²⁾

나와라 나와라, 하며 여전히 구청장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딩동, 하고 벨이 울리자 노란 천을 씌운 소파에 앉아 있던 남자가 접수처를 향해 걸어갔다. Ding, 하고 다음 구민을 호출하는 소리를 등지고 바깥으로 나섰다. 조금 전 바로 머리가 젖은 사람들과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사람들 사이를 걸어 횡단보도 앞에 섰다. 마이크를 쥔 남자가 탁하게 쉰 목소리로 어떻게 살란 말이라고 묻고 있었다. (146~147면)

시민사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구민으로서 구청에 들려 자기 일을 보지만, 구민이 아닌 호모 사케르인 사람들은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사람들과 대치한다. 그들은 같은 시민이지만 누구는 구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다.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52) 김미정, 「권여선, 『토우의 집』, 자음과모음, 2014 / 김인숙, 『모든 빛깔들의밤』, 문학동네, 2014 / 황정은, 『계속해보겠습니다』, 창비, 2014,」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443면, 2015.

단지 구민으로써 구청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구민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구민이 아닌 호모 사케르로서 있다면, 그들은 구민이 아닌 것이다. 이 상황을 극명한 사이를 지나치는 ‘나’는 명확한 경계에 있지 않으며 정체성도 불분명하다. 그는 그저 확장실을 가기 위해 구청에 들어간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구민일까. 시위자일까. 그는 노동하는 호모 사케르다. 그는 이 두 사이에 정체성이 없다.

어느 틈엔가 녹색 버스도 늘어서 더 많은 경찰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밀짚모자를 쓴 남자가 팻말을 목에 걸고 이쪽을 향해 서 있었다. 팻말에 적힌 글자가 너무 조밀하고 두꺼워서 유달리 크고 네모지게 적힌 생존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쪽에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상당한 시간 목에 걸고 다닌 듯 그의 생존이 너털너털했다. 내가 그를 보는 것을 그도 보았는지 그가 나를 보았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았다. 한동안 서로 바라보았다. 버스가 신호를 받고 멈춰서며 그를 가렸다. 다시 바위처럼 살아가보자는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 지나간 자리를 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148~149면)

시위자의 목에 걸린 생존은 너털너털해져 있다. 단지 팻말의 ‘생존’이지만 그의 목에 걸려있는 ‘생존’의 무게는 다르다. ‘나’는 그를 보고 그도 나를 본다. 그들은 ‘응시의 순간’에 있지만 ‘이해의 순간’엔 버스가 지나가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보리갯 떡’을 파는 사람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미 의미의 순간, 즉 사건의 의미화의 순간이 역순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바위처럼 살아가보자’라는 애절한 노래가 들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겠지만, 그는 사라지고 없다. 결과의 순간이 없는 것이다. 이때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했듯이 이러한 되기devenir는 유비나 모방 혹은 재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딴사람-되기’는 그러므로 타자와의 합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낡은 자아를 허물고 자기와 타자의 ‘사이’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한다.⁵³⁾

어쨌거나 이것을 팔고 일당 오만원씩 한 달을 꼬박 일하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버는구나 오십만원 정도를 더 버는 셈인가 그 정도 여유가 있었더라면 장어나 지구본을 두고 녹두와 다툼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런 정도로 속이 상해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로 그만둘까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볼까 하더라도 당장 생계 생존 생계 이것도 저것도 뭔가 서글프고 공허해서 양산, 양산만 외치고 있는데 … 할머니가 양산 판매대를 들여다보았다. …

이건 에이에스 되나.

돼요./되나.

됩니다.

부러지면 새걸로 바꿔주나.

53) 한기욱, “문학의 새로움과 소설의 정치성- 황정은 김사과 박민규의 사랑이야기”, 창작과비평, 창비, 36권 3호, 398면, 2010.

그 말에 할머니, 하고 정색하고 대답했다.
 살살 쓰면 되지 왜 부러져 살살 쓰세요.
 (149~150면)

그의 본업보다 이렇게 ‘노동’을 낳 것으로 파는 것,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것이 더 그에게 생존을 가져다준다. 이 사실이 공허해서 그는 ‘양산’만을 외치고 있다. 양산은 ‘생존, 생계’만큼이나 공허한 외침이다. 시위자들의 ‘생존’이라는 말이 그저 ‘양산’을 파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항하지만 주권자들에게 ‘양산’을 파는 행위정도로 격하된다. 그들의 생존은 에이에스가 된다. 노동자가 부러지면 새 걸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살살 쓰면 되지, 왜 부러트릴까. 왜 부러트릴 생각을 할까. 그런 나약함은 ‘양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나약함은 ‘생필품’으로 다시 교환된다. 누이는 자신의 일당을 받고 아직 정리중인 판매대에서 점心和 속옷과 타이즈를 산다. 이런 ‘생필품’값으로만 누이의 품삯이 모두 사라진다. 즉, 그들이 점심값도 공제된 채 노동하며 번 돈은 다시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필품이 된다. 그들의 노동은 ‘생존’이다.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얼굴을 붉히고 앉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하고 생각했다.
 정말로 나온다면.

나와라, 외치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 오줌을 누러 가는 뒷모습 그러니까 누구도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을 뒤통수라거나 사람 좋아보이도록 웃는 정치인의 어깨 너머에서 양산을 외치는 모습이라거나 무심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어느 것이든 가장자리쯤에 어찌면 지직거리며 동원되었을 조그만 얼굴을 생각하자 찝찝하고 웬지 자존심 상했다. 찍어도 괜찮겠느냐고 한 번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었냐 씨발놈들아, … 버스가 신호를 받고 멈췄다. 보리겅 떡 보리겅 떡, 하는 소리가 뒤로부터 다가오더니 엔진소리 요란한 트럭 한 대가 내가 앉은 자리에 나란히 멈춰섰다. … 보리겅 떡 보리겅 떡 보리 떡 보리 떡 보릿 떡, 하며 놀 듯 노래하듯 확정되는 소리와는 다르게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피로에 눌린 듯한 모습으로 앞을 보고 있었다. 다른 말도 없이 보리겅 떡 보릿 떡, 하고 반복되는 소리를 노곤하게 듣고 있다가 눈물이 글썽고인 채로 집까지 실려갔다. (152면)

‘나’는 카메라를 통해 같은 ‘공간’에 놓여진 상황에 대해 분노한다. 찍어도 괜찮겠느냐는 권리도 무시되어버린 채, 그는 한 공간에 등장한 ‘인간’이다. 그는 그 광경에 대해 무관했고, 그저 오줌이 마려왔다는 것, 그 뒷모습이 찍혔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버스에서 마주친 목에 생존을 건 그와 트럭 속의 남자가 겹치면서 눈물이 고이게 된다. 그가 외친 ‘양산’과 ‘생존’과 ‘보리겅 떡’은 결국 같은 말인 것이다.

김 씨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의 회상 역시도 ‘방송용 카메라’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주권자(구청장 후보)의 공간’, ‘바자회의 공간’, ‘집회의 공간’을 전부 오버랩한다. 김 씨는 ‘어느 프레임엔 결국 내 모습이 찍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누구도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을 뒤통수’라거나 ‘사람 좋아 보이도록 웃는 정치인의 어깨너머에서 양산을 외치는 모습’이라거나 ‘무심하게 카메라

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찝찝하고 웬지 자존심' 상해한다. 자신이 호모 사케르로서 확정되는 공간의 중첩을 거부하고 싶은 심리이다. 그리고 '찍어도 괜찮겠느냐고 한 번 정도 물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호명 거부에 대한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분노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의 잠꼬대 소리에 녹두는 '시'냐고 묻는다. '로베르따 어찌고 이태리 메이커에 제조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노래'라고 답한다. 이때, 김 씨의 잠꼬대는 꿈꾸는 중인데도 명확하다. 현실에서는 중첩되게 발화되었는데도 자신의 생존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말한다. 오히려 그것이 호모 앨리시어에겐 꿈이기 때문이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적힌 팻말을 오랫동안 목에 걸고 다녀 '생존'이 너털너털해진, 생존에 목매단 호모 사케르의 발화는 황정은에게 '시'이자 '노래'인 것이다.

2) 생명 노동하는 호모 사케르

- 「디디의 우산」

황정은은 「디디의 우산」에서 생명으로써 관리되는 청년주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디디와 그의 오라비는 생선 좌판을 하는 어머니와 허리병을 앓는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 그들은 중산층도 아니다. 황정은은 먼저 디디의 오라비에 대한 청년주체의 노동을 보여준다.

포클레인 기사가 되면 한 달에 몇백만원쯤 간단하게 벌 수 있다네요 그런데 그 기사가 되려면 우선 몇백만원쯤 감습비로 지불해야 한다네요. 아버지,라고 딱히 아버지를 향한 것도 아닌 비스듬한 자세로 허공을 보며 말했다. 남매의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로 누워 대답하지 않았다. 디디의 오라비는 아비와 더불어 잠시 침묵하다가 포클레인 기사가 되면,하고 다시 말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디디의 오라비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159면)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자본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몇백만원의 자본은 없다. 그들은 노동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더라도 아버지는 말이 없다. 아버지는 그 대화에 응하지 못한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단순히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은 그저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몇백만원의 학원비를 지불하는 중산층에게도 해당된다. 아버지가 대화를 하지 않고 디디의 오라비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저 공허한 공회전만 할 뿐이다.⁵⁴⁾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역할

54) 권희철의 '냉소주의 시대' 규정은 황정과와 편혜영의 소설들에 대한 그의 작품 분석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정홍수의 경우는 "신자유주의의 한국 점령을 실질적인 수준에서 완수한 구제금융사태 이후 우리 모두는 경제적 동물의 불안을 경쟁적으로 내면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34면)고 언급하지만 이런 시대인식이 작품 분석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IMF사태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라든지 '경제적 동물의 불안' 같은 묘사에서 이른바 97년체제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 판본이라 할 김홍중(金洪中)의 '포스트-진정성 체제'론/ '속물주의 시대'론을 강하게 환기시킨다."한기옥, 앞 논문, 396면. 이러한 부모-자식간의 자본 문제는 여러 담론 문제를 떠나 '경제적 동물의 불안'

적 상황 즉 노동주체들이 노동하기 위해 자본을 쓰며 주체들이 자본과 생명을 거의 탈진할 때까지 몰아 부친다.

디디의 오라비는 포클레인 기사를 단념하고 군대에 들어갔다가 더 말수 적은 오라비가 되어 돌아왔다. 디디의 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병을 앓았고 디디의 어머니는 생선 좌판을 넓히느라고 종래 가지고 있던 빗에서 빗을 조금 더 얻었다. 디디는 중학교에서 상업고등학교로 진로를 잡아 취직했다. 첫 급여를 받은 이후로 여러 가지 물건을 자기가 번 돈으로 샀고 그 가운데 우산이 종종 있었다. 디디는 식구 수에서 한 개나 두 개쯤 더해서 우산을 갖춰두었다. 서너 차례 비가 지나가고 나면 누군가 우산을 잃어버려 우산 수가 줄었다. 디디는 우산을 사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불평 없이 또 우산을 사다두었다. 비 오는 아침엔 차분하게 자기 몫의 우산을 펼치고 출근했다.(161)

결국 디디의 오라비는 자신의 노동권리보다 의무를 내세운 군대에 입대했고, 디디의 어머니는 생존을 위해서 빗을 더 얻는다. 디디는 자연스럽게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 일을 시작한다. 여기서 황정은은 디디의 꿈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저 다들 뭔가를 그리고 있었지’라고 초등학교 동창들의 대화에서 은밀하게 나타낸다. 이것이 ‘비가시적 인권침해’, 즉 구조적 폭력이다. 디디는 자신이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 ‘뭔가’는 구조적 폭력으로 인해 소멸되어 버렸다. 그 ‘뭔가’는 알 수 없다. 디디는 그저 우산을 한 두 개 더 갖춰둔다. 황정은은 이 ‘뭔가’를 우산으로 나타내면서 계속 공허한 ‘채우기’만 반복한다. 그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불평 없이 사둔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잃게 된다. ‘뭔가’를 계속 잃게 되는 청년주체들인 것이다.

‘디디’라는 호모 사케르는 오히려 복지제도라는 틀 안에서 더 ‘날것의 생명’이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점심을 먹고 계산대로 돌아가다가 매장에 박힌 쇠고리에 걸려 넘어졌다. ... 디디는 부러진 이를 담은 우유갑을 손에 쥐고 병원에 실려갔다. 부서져나간 이들은 너무 잘게 부서져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이 많은 의사가 디디의 잇몸에 남은 조각을 뽑아내며 너는 이제부터 평생 주기적으로 가치를 교체하고 관리해야 하니 돈 많은 집에 시집가야겠구나,라고 말했다. 디디는 아픔보다도 평생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풀죽어 집으로 돌아갔다. ... 디디의 직장인 창고형 매장 식자재 센터에서 보험을 적용해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회사가 네 치료비를 댔으니 앞으로 일년 육개월은 계산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라고 조장이 말했다. 도중에 그만두면 너는 그동안 받은 치료비 혜택을 전부 갚아야 하는 거야,라고 말해 두고 그녀는 호호호 웃었다. 디디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계산대로 돌아갔다.(162)

디디는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다. 그 누구의 잘못은 아니었고 가해자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의 폭력이 발생한다. 평생 주기적으로 가치를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디디의 신체적 아픔보다

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뒤야 할 것이다. 디디의 오라비와 아버지는 ‘경제적 동물의 불안’ 대물림 하는 관계로 자본이 아닌 이 ‘불안’을 황정은은 ‘대답 없는 대화’로 나타낸다.

도 더 아픔을 불러일으킨다. ‘평생 비용’은 디디의 ‘생명 노동’이다. 디디는 보험을 적용해 전액을 받게 되지만, 이 보험은 ‘평생’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비용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이 ‘보험’이 아감벤의 지적처럼 스스로의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을 주체에게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디디에게 폭력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은 주체를 ‘배제시킴으로써 그를 포함시키고 그를 포함시킴으로써 그를 배제한다.’ 이로 인해 디디의 노동은 ‘생명 노동’으로 변하게 된다. 디디는 일년 육개월 간 일을 그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 육개월마다 회사와 노동을 계약해야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열 시간 근무에 세금을 빼고 백만원씩 지급받았고 버스로 한 시간이 넘는 통근 거리를 오가는 일이 고달팠다. 계산대를 향해 물려드는 물건들의 값을 계산하는 일은 물건을 상대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다. 사람만큼 피곤한 것이 없었고 써비스 직원을 상대하는 고객만큼 거칠 것 없게 공격적인 사람도 드물었다. ... 디디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곰곰이 자기 나이를 생각해보고 막연하게 다른 일을 꿈꿨다. 일년 육 개월을 채우자. 그뒤에 미련없이 그만두자고 마음 먹었다. 사고로부터 일년 이개월이 지나서야 디디는 일년 육개월에 관한 이야기가 허구이고 농담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디디는 뭐야, 하며 하하 웃었다. 내일이라도 그만두자 그만뒤. 아침 버스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 버스에선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니 조금만 더,라고 생각했다.(163면)

디디는 언제나 ‘타자’에게 공격당한다. 인권침해를 했더라도 가해자가 ‘법에 없는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게 된다. 인권문제가 점점 전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비가시화되면서 인권문제 자체가 포르노화로 변질되고 말았다. 법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면서 인간성이 투명해진 것이다. 결국 법이 닿지 않는 지점에서 인권은 ‘타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법에 기대인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권은 인권주체가 아니라 타자에게 나온다. 인권 보장은 인권주체 스스로가 아니라 타자가 보장해준다. 그리고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맞기도 한다. 열 시간을 근무하지만 급여는 백만원 뿐이다. ‘타자’의 인권침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저 ‘피곤한 것’으로 인권침해라는 인식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디디는 일년 육개월을 채우자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저 허구고 농담이라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다. 디디는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기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디디에게 법과 제도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보험제도가 그녀의 발목을 묶었을 뿐이며, 법은 디디를 방관한다. 이러한 ‘무법지대’는 ‘창고형 매장 식자재 센터’다. 이 공간성은 오직 ‘타자’만이 존재할 뿐, 법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디디에게 적용된 법도 이 ‘공간’이 아니라 ‘무법지대’ 밖에서 이루어진다. ‘무법지대’는 그저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일 뿐이다. 보험은 국가와 회사 간의 일이었지, 디디의 일은 아니었다. 디디에게는 그런 결정권조차, 당연한 보장이겠지만, 오히려 당연한 보장으로써 디디는 다친 장본인이면서도 이 사건에서 배제된다. 디디는 완벽한 무법지대의 호모 사케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른 사회적 변동 역시 디디를 방관한다. 국가와 자본은 아주 깊게 결부되어 나타난다.

시절이 어렵습니다. 전 국가적 위기가 아닙니까. 회사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의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명료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 조만간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더 가벼운 내용의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 서명하시는 경우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없고 식비와 차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근무 중 다쳐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달 이 내용으로 계약서를 갱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170면)

자본이 곧 ‘국가적 위기’가 되어버린다.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명료한 결론’은 법이 적용되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결론이다. 구조 조정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 조정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폭력을 낳을 뿐이다. 자본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국가 위기라는 주권자의 선언은 곧 법에 대한 수정을 말하는 것이다. ‘회사는 유연하고 여러분은 자유’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예외 되었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그 선언은 그들을 ‘좀더 가벼운 내용의 계약서’를 갱신하며 ‘야근 수당과 식비와 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호모 사케르를 생산한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는 그들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고 강요할 뿐이다. 디디의 동거인인 도도 역시 공항에서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알레르기에 시달려도, 의사는 ‘세척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별감응 없이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직업을 바꾸는 것’(168면)뿐 이라고 말한다. 도도 역시 ‘생명 노동’인 것이다.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다가 삼십삼 페이지에 삽입된 도표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진 상자 속에 검은 막대들이 솟아 있었다. 소득과 직업으로 따져본 수명에 관한 통계라는 설명이 붙은 도표였다. 디디는 도표에 손가락을 얹고 도도의 좌표를 따져보았다. 도표에 따르면 도도는 여섯 번째 군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수명이 가장 짧다는 아홉 번째 사람들보다는 육년간량을 더 살고 수명이 가장 길다는 첫 번째 사람들보다는 팔년간량 일찍 죽는다는 사람들 틈이었다. 디디는 도표가 실린 페이지를 손으로 누르고 있다가 모서리를 접어두었다. .../난 오늘 종일 생각했어, 도도/월./돈에 대해서./그거라면 나도 늘 생각하지./뭐라고 생각하는데?/돈이 없구나, 하고 도도가 말했다. 디디는 도도를 바라보며 밥을 씹다가 컵을 집어 물을 마셨다. 저 말이야 도도./돈이 있으면 더 살고 돈이 없으면 덜 산대./그건 그렇지/그게 그런가./돈이 문제지./돈/돈이 언제나 문제가 되지./.../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만드는 어떤 것들./어떻게 생각해, 하고 디디는 조그만 밥 무더기 네 개를 탁자에 늘어놓고 도도에게 물었다./어느 것이 정말 문제일까./응?/이 가운데 어느 문제가 가장 문제라서 돈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뭐랄까 좇같은 답이 나오는 걸까. 나 오늘 종일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뭐 좇?/응./도도가 눈을 깜박이며 디디를 보았다./뭐?/돈./.(175면)

인권주체들은 숫자 체계로 변환되어 오히려 ‘숫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율과 비중 에 따라 자본으로부터의 권리 보장을 획득하였다. 소득 수준, 가정 구성원 수, 보유 재산 등으로 그들

은 차등적으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해진다. 이것이 인권주체로 호명된 사회계층적인 존재방식이다. ‘많은 소득을 얻은 계층과 사회안전망 속에 존재하는 최하위계층의 삶의 방식과 소비방식은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경제적 업적주의로 인간의 절대적 평가가 마련되어 부의 차이가 결국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인간성은 그가 산출해내는 경제적 가치인 소득과 지위로 설정’된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⁵⁵⁾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집단이 인권침해를 더 겪는 이유는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자원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원이 특정 집단이나 계급에 의해 독점되어 있으면 시스템 내에 폭력이 존재하게 된다. 어떤 구조적 폭력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폭력 속에 노출된 인권주체들은 근본원인 속에서 수많은 직접원인들과 마주친다.

‘생명 노동’으로 계산되어 오직 ‘숫자의 권리’만을 가진 사람들, 숫자로 변환시키는 폭력과 그것을 여실히 ‘생명’으로 드러내는 이 구조적 폭력은 디디에게 ‘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이 숫자로 표현되는 ‘타인’은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거리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디디는 ‘돈’이 무엇인지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며 얼마나 사는지도 알며 ‘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안다, 디디는 ‘이 가운데 어느 문제가 가장 문제’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돈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냉소적 주체다.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디디는 그저 냉소할 뿐이다. 도표 속 숫자로 표기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첫 번째 사람들보다는 팔년가량 일찍 죽는’다는 폭력이다. 황정은은 이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 냉소를 던진다.

그냥, 그냥, 그냥 그랬어. 우린 고등학교 때보다도 중학교 때보다도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이잖아. 서로 어렸을 때 얼굴을 본 사람들이잖아. 애들이 어른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서글프더라./난 고지혈증이다./마흔도 안됐는데 벌써 그거냐./서글프다./그거야 말로 서글프다./아 웃겨 좀 그만./나 진짜 웃긴 얘기 아는데 너희들 아냐. 이라크 기자가 미국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거 아냐./나 그거 봤다./던지더라./미국 대통령한테./신발을./.../이탈리아 총리는 코피 터졌어./개는 뭘 했지?뭔가 했으니 터졌지./신발을./(178면)

그들은 소비된 자신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냉소한다. 오로지 냉소할 뿐이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 고통에 연루되어 있는 스스로를 자꾸 확인한다. 그렇기에 삶의 끔찍함 속에서 막연한 희망에의 맹목이나 신념대신, 괴물은 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괴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인간’으로 살수 있는 그들의 방법이다.’⁵⁷⁾ 여기서 ‘신발’이라는 사물이 나타나는데, ‘신발’은 호모 사케르들의 저항으로써 암시된다. 디디와 도도가 같이 살기 위해 이사 하던 날, ‘두 사람의 이삿짐 속에 누구의 것도 아닌 운동화가 오로지 한 짝’이 있었고 도도는 그걸

55) 이재호, 앞 논문, 219면.

56) 조효제, 앞 논문, 241면.

57) 김미정, 앞 논문, 442면.

비닐봉지 속으로 던졌다.(168면) 비닐봉지 속으로 던진 신발은 미국 대통령에게 나타난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냉소를 던진 것이다. 오로지 ‘삶 속으로 내던져지는 생명’은 생명으로써 ‘첫 번째 사람들’에게 던져진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들에게 ‘신발’일 뿐이다. 이렇게 냉소하며 웃던 그들은 잠들게 된다. 디디는 잠에서 깨어 그들이 챙겨갈 ‘우산’이 있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황정은은 디디가 “달걀, 하고 신발장을 열어보았다.”(179면)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소설을 끝낸다.

과연 신발장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산’이 있을까? 아니면 ‘신발’이 있을까? 황정은은 그 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들이 냉소 후에 다시 집밖을 나설 때, 그들이 ‘무법지대’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은 ‘신발’을 신을 뿐, 던지지 않을 것이며, ‘우산’은 공허하게 ‘있어야 할 뿐’이다. 황정은은 이런 가능성만을 열어둔다. 그것은 아마 독자가 직접 스스로 ‘신발장’을 열기 바라는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VI. 결론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들은 ‘신발’을 신고 ‘양산’을 외치거나 ‘생존’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한 끼를 ‘보리갯 떡’으로 때우며 열심히 노랑진에서 공부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다. 어떤 혹자들은 문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황정은은 최근 『아무도 아닌』을 출판하고 기념 강독회에서 “문학의 쓸모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을 보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문학을 좋아하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무력할 수가 있느냐는 당혹감, 혹은 애정이 섞인 분노가 담겨 있는 거죠. 쓰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한 가학적인 질문일 때가 많고요. 사실 문학의 쓸모를 묻는 질문은 제가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⁵⁸⁾ 라고 말했다. 황정은의 이 말은 논자가 이 논문을 쓰면서도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다. 과연 청년인권에 있어 ‘문학’이 쓸모가 있을까? ‘문학’이 청년인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 ‘인권감수성’이다. 문학을 통한 청년인권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문학’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가시적인 인권상황’을 언어라는 가시적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인권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특히 가해자가 ‘인간’이 아닌 경우에 이 점은 더 선명해진다. 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의 권리 상실은 ‘죄’를 통하지 않고 발생한다. ‘법’은 자본주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자본으로서 피해를 만들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근본원인에 ‘자본’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학이 드러내는 ‘인권상황’은 인권감수성을 통해 더 민감하게 나타날 것이며, 법과 제도는 느리지만 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학’이 법과 제도에게 시간을 가져다준다.

둘 째, ‘문학’은 주권자에 대해 ‘문학적 경고’를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권위와 같이 법과 제도에 대해 하나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사례에 대한 권고조치가 아니라 더 폭넓은 시각

58) 임나리, “황정은, ‘매일 저녁 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 문화웹진채널에스, 문화 뉴스 > 작가와의 만남 | <http://ch.yes24.com/Article/View/32505>, 2017.01.13.

을 제시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에 대한 언어적 사유기 때문이다. 이 사유를 통해 넓은 지평을 제공함으로써, 법과 제도가 더 첨예하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문학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셋 째, ‘문학’은 ‘타자’에 대한 불안을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타자간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권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존재는 ‘법’이 아니라 타자일 것이다. ‘문학’은 사건이나 상황을 ‘인문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타자’의 행위와 심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해의 지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감수성, 즉 ‘인권감수성’이다.

논자는 이 ‘문학’에 있어서 주권자가, 혹은 ‘타자’가 ‘인권’의 ‘권리’를 알기 보단 ‘인간’ 그 자체를 느끼기 바란다. 그러므로 법보다, 제도보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감수성’에 기대어 본다. 문학의 힘은 이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권자가 처절한 인간의 삶을 본다면, ‘법’을 제정할 때, 더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을까? 혹은 어떤 타자가 문학을 읽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있어,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타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비가시적인 폭력에 있어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 있고, ‘타자’가 ‘타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아감벤에 따르면 ‘whatever’는 영어로는 ‘뭐든 상관없다는’ 뜻이지만 이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 ‘quodlibet’는 정반대의 뜻이라는 것이다. 가령 “‘Quodlibet ens’(whatever entity)는 “무엇이라도 상관없는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항상 중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whatever singularity’에서 “문제의 ‘whatever’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예컨대 좌파라는 것, 프랑스사람이라는 것, 무슬림이라는 것 같은 개념)에 관해서 무관심하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점에서 독자성과 관련된다.”이 설명을 고려하면 ‘whatever’는 여기서 어떤 정체성을 초월해 있다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되 그런 구분법에 귀속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불교의 ‘여여(如如)한’의 뜻에 가깝다.⁵⁹⁾ 아감벤의 이 제안은 ‘호모 사케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아감벤 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있다. 문학은 ‘명시적’으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켜 ‘타자’간의 신뢰를 보장한다. 법은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신뢰란 타자들 간의 계속적인 교류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가 바탕인 사회가 된다면, 무법지대에서도 인권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59) 한기욱, 앞 논문, 399~400면.

기본문헌

황정은, “파씨의 입문”, 창비, 2013.

참고문헌 및 논문

강영안, 한국프랑스철학회 엮, “현대 프랑스 철학사”, 창비, 2015.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김경미,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 태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경민, “공감을 통한 문학의 인권감수성 형성-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꽃잎이 지고」를 대상으로 5·18 관련 인권문체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4권 1호 47-71면 2014. 4

김기곤, “인권정치적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0권, 2호, 49-90면, 2010.

김기곤, “‘열린 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3권 2호, 237-266면, 2013.8.

김기환, “상대주의 인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미정, - “권여선, 『토우의 집』, 자음과모음, 2014 / 김인숙, 『모든 빛깔들의 밤』, 문학동네, 2014 / 황정은, 『계속해보겠습니다』, 창비, 2014”,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430-444면 2015.

김민수, “인권의 보편성과 실천성에 관한 연구,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건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석, 『에크리』, 살림, 2007.

김성희, “인권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영구, “피해자 중심의 인권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노근리사건대책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영선, “인권 감수성은 펜보다 무섭다”, 창작과비평, 6월호, 494-498면, 2015.

김용훈,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131-170면, 2011.

김익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정화, “인권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 -권리와 효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중섭, “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 현상과 인식”, 현상과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권 4호, 131-153면 2006.

- 김충희,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한솔, “인권의식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한국법교육학회, 8권 제1호, 81-110면, 2013.
- 김혜정,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담론 성격에 관한 연구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과 특수 고용노동자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 류지현, 허창영,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8권 1호, 175-202면, 2008.
- 박순천, 조혜정,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6권 120-160면, 2007.
- 박진옥,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민지, “하버마스의 인권 이론의 다원성 수용 문제 - 『사실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방대혁, “대학생의 인권인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백운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4권, 323-351면, 2001.
- 송경호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 - 존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광영,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아시아문화”, 아시아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0권, 145-180면, 1994.
-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07
- 오수용, “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인권의 본질로서 능력과 연구 방향”, 정치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16권 2호, 73-105면, 2010,
- 오수용, “루소의 시민사회와 인권실현,”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8권 3호,, 157-182면, 2008.
- 오수용, “인권,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1407-1426면, 2008.
- 오영숙, “다문화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유준, 마음의 혁명 - “황정은 소설집, 『파씨의 입문』(창비, 2012)”,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83-286면, 2012면.

-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과 우리 인권의 미래”,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27권, 9-14면, 2009.
- 이정기,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 의견표명문과 법원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한국언론정보학회, 337-366면, 2009.
- 이정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과정의 시민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5권 3호, 321-349면, 2015.
-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9권 3호, 195-223면, 2008.
-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적 모색 -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벌-도시로”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3권 1호, 143-165면, 2013.
- 장희국,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진보평론, 진보평론, 63권, 339-347면, 2015.
- 정원섭, “인권의 현대적 역설-롤즈의 민주적 평화론에서 인권”, 철학, 한국철학회, 112권, 173-191면, 2012.
- 정성훈,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2권 3호, 381-406면, 2012.
- 정진옥, “국제사회복지에서 인권 감수성 키우기: 인지적으로 도전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복지학, 국제사회복지학회, 2권 1호, 93-122면, 2013.
- 조준현, “맞아 죽어야 마땅할 인권?”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48-59면, 2009.3.
- 조효제, “인권 달성의 근본조건”,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5권 3호, 229-273면, 2015, 12.
-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김상운 역, “인권을 넘어”,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34-244면, 2006. 3.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전근배, “모든 것이기에 그 무엇도 아닌, 인권을 묻다”, 레프트대구, 민중행동, 9권, 208-238면, 2015.
- 정경수,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 유럽인권협약 해석의 판단여지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회, 29호, 153-176면. 2009.
- 천정훈, “부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방글라데시 베트남 노동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규원, “학생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토니 마이어스,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앨피. 2005
- 한기욱, “문학의 새로움과 소설의 정치성- 황정은 김사과 박민규의 사랑이야기”, 창작과비평, 창비, 36권 3호, 391-411면 2010.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허수미,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7권, 4호, 153-181면, 2008.

허성범, “현대 다윈사회에서의 인권 정당화 하버마스의 담론이론과 롤즈의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기타 자료

임나리, “황정은, ‘매일 저녁 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 문화웹진채널예스, 문화 뉴스 > 작가와의 만남 | <http://ch.yes24.com/Article/View/32505>, 2017.01.13.